

평창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 특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8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개정(2011.6.30)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 재정비하며
지난 2010년 11월에 의결된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의한 전통산업보존구역은
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 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
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,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근거 조항 재정비 함(안 제11조제1항)

- 현재 군수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점가의
경계로부터 “500미터 이내”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를 “1킬로미터
이내”로 확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협의 : 해당없음

라. 입법 예고 : 2011. 07. 15 ~ 08. 04(21일간), 제출의견 없음

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00미터”를 “1킬로미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전통산업보존구역의지정)</p> <p>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<u>500미터</u>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11조(전통산업보존구역의지정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킬로미터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유통산업발전법

제13조의3(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